

자주 발생하는 질문

신고를 할 경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 노약자, 혐의가 있는 가해자 및 신고자의 연락처
-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 노약자의 안전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점

신고를 하고 난 후는 어떻게 되는가?

- 피해 노약자와 개별로 면접합니다.
- 보호국은 피해 노약자에게 가장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과 적합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 노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동의해야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약자에게는 해당 서비스를 거부 혹은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전합니다. DSHS는 노약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거주지에서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
- DSHS는 발생한 상황이 범죄 행위가 연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외 알아야 할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

- 선의로 신고하였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이름과 노약자에 관한 신원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공무로서의 공개 혹은 다른 주나 연방법에 적용될 수도 있음).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는가?

성인 학대 및 예방 그리고 노약자 지원을 위한 추가 자원과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adsa.dshs.wa.gov 를 방문하십시오.

책자 주문: 본 책자와 그 외 DSHS 발간 책자는 인쇄부 일반 스토어(Department of Printing's (DOP) General Store)를 통해 입수할 수 있습니다. DOP의 웹사이트 www.prt.wa.gov를 방문하십시오.

함께 노약자를 보호합시다!



노약자 학대 신고 안내서



ADSA Aging & Disability Services Administration



노약자 학대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바로 이웃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학대는 모든 민족 배경,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가족 성원, 배우자, 친지 혹은 노약자를 수발하는 사람으로 노약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대는 노약자 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노약자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고된 각 학대 사례건당 네 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약자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대부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약자 학대 예방 혹은 학대 저지를 위해 힘껏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신고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 둡니다.
2. 누가 노약자 학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둡니다.
3. 여러 유형의 학대 증상이나 징후를 살핍니다.
4. 노약자 학대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합니다.

1 신고할 책임이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되면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 DSHS 직원
- 계약관계로 DSHS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 카운티 검사관 혹은 의료/진료원
- DSHS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기숙홈(boarding homes), 성인 패밀리 홈(adult family homes), 양로원(nursing homes), 입소생활 교육센터(residential habilitation centers) 및 군인의 집(soldiers' homes) 포함
- 사회복지사
- RCW 18.130에 정의되어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예: 의사 혹은 간호사
- 크리스천 사이언스 전문의(Christian Science practitioner)
- 사회복지, 웰페어, 정신건강, 성인 일일 건강, 성인 데이케어, 홈헬스, 홈케어 혹은 호스피스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 법집행관(예: 경찰관)
- 전문 교육자

2 노약자는 누구인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성인이나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법적 보호자가 있는 사람
-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
- DSHS/ADSA에서 면허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
- DSHS와 계약 관계이 있는 개인 수발자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는 사람
- 면허된 건강기관, 호스피스 혹은 홈케어 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서비스(in-home services)를 받고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개인 관리 수발을 받는 사람.



3 학대 조짐이나 징후의 유형을 예의주시하십시오.

학대란 노약자에게 고의적으로 고통, 손상 및/혹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학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해나 입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 노약자가 어느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겁내는 경우
- 노약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경우
- 피해 노약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방임이란 노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기하거나 노약자의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주요 지원 행위를 차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노약자를 집에 유기하는 경우
- 노약자가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고 신고할 경우

무관심(방치)이란 노약자의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주요 지원을 거부 혹은 이행하지 않고 손상/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 방치란 자기 스스로 건강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외모관리가 허술해 지는 경우
- 치료를 하지 않은 손상이나 건강문제
- 안전하지 못한 생활 조건

착취란 고의적으로 노약자를 개인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노약자의 소유물이나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
- 갑작스런 돈의 양도나 이전, 혹은 승인하지 않은 은행 현금카드의 사용, 수표의 서명 날조
- 지나친 유도 혹은 강압

4 노약자 학대 혐의자를 즉시 신고하십시오.

언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가?

노약자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즉시 DSHS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자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 학대 혐의자 및 신고의무자의 여부에 따라 다른 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보호서비스국(APS) 신고 번호

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해당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내의 성인보호서비스국(APS)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지역 1

Spokane, Grant, Okanogan, Adams, Chelan, Douglas, Lincoln, Ferry, Stevens, Whitman 및 Pend Oreille 카운티

1-800-459-0421 (TTY) 509-568-3086

지역 2

Yakima, Kittitas, Benton, Franklin, Walla Walla, Columbia, Garfield 및 Asotin 카운티

1-877-389-3013 (TTY) 1-800-973-5456

지역 3

Snohomish, Skagit, Island, San Juan 및 Whatcom 카운티

1-800-487-0416 (TTY) 1-800-843-8058

지역 4

King 카운티

206-341-7660 (TTY) 1-800-977-5456

지역 5

Pierce 카운티

253-476-7212 (TTY) 1-800-688-1165

Kitsap 카운티

360-473-2192 (TTY) 1-800-688-1169

지역 6

Thurston, Mason, Lewis, Clallam, Jefferson, Grays Harbor, Pacific, Wahkiakum, Cowlitz, Skamania, Klickitat 및 Clark 카운티

1-877-734-6277 (TTY) 1-800-672-7091



신고 의무자의 책임

- 신고 의무자는 학대 혐의자를 신고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노약자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자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체적 혹은 성적인 폭행의 경우 경찰과 DSHS 두 군데 다 신고해야 합니다.*

*노약자 신고조치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RCW 74.34.035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 학대 신고 번호

노약자나 아동 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노약자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일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800-737-7931/음성/TTY

사회보건부는 본 사회보건부의 정책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의 활동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나이, 종교, 신념 혹은 장애여부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민원처리(CRU) 신고 번호

성인 패밀리 홈, 기숙 홈 혹은 양로원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학대 신고는 CRU 신고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1-800-562-6078 (TTY) 1-800-737-7931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거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911로 전화하십시오!